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6회 제2차 정례회

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(의회사무국)
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12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2. 18.

운영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(의회사무국)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
- 제출일자: 2025. 12. 2.
- 회부일자: 2025. 12. 3.
- 검토기간: 2025. 12. 5. ~ 12. 11.

2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-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3. 추경예산안 편성 요인

-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
- 법정 필수경비(인건비 등) 부족분 반영 및 집행잔액 감액
- 불요불급한 세출 부분에 대한 삭감 조정

4. 추경예산안 내역(의회사무국 소관)

가. 세입예산: 해당 없음

나. 세출예산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(%)
의회사무국	4,613,624	4,766,453	△152,829	△3.21
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	1,770,756	1,783,390	△12,634	△0.71
합리적인 인사행정	6,460	7,682	△1,222	△15.91
의회발전교육 및 교류	231,886	397,677	△165,791	△41.69
인력운영비 (의회사무국)	2,503,051	2,467,733	35,318	1.43
기본경비 (의회사무국)	101,471	109,971	△8,500	△7.73

주요 편성 내역

-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(직원) 12,523천원 감액 편성
- 의원연수 등 국내여부 및 타시도 비교견학 23,000천원 감액 편성
- 의원 공무국외 출장 63,918천원 감액 편성
- 국가공식행사 자매결연 추진 17,237천원 감액 편성
- 기본급 43,591천원 증액 편성

5. 검토의견

-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6억 1,3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,282만원(3.21%) 감액한 47억 6,645만원임.
- 의회발전교육 및 교류 1억 6,579만원(41.69%),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 1,263만원(0.71%) 감액하고, 인력운영비 3,531만원(1.43%) 증액하였음.

- 세부적으로 의원국외여비 8,632만원(83.49%), 의원국외출장수행 1,252만원(59.63%), 의원연수등 국내여비 1,100만원(45.83%), 의원역량개발비 800만원(83.33%), 국내여비 850만원(54.66%) 등을 감액하고, 인건비 3,531만원(1.43%) 증액하였음.
-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 회계연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추진 후 잔액을 삭감하고, 직원 보수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편성 목적은 타당하나, 당초 예산안 편성에 세심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〈이상 검토보고를 마칩〉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